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7

발의연월일: 2021. 6. 2.

발 의 자:김용판·김영식·권명호

박대수 • 추경호 • 송언석

김예지 · 김성원 · 이종성

박성중 • 박덕흠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 자동차 등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만, 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편 익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

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법」 제77조제1항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	②
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u><단</u>	
<u>서 신설></u>	<u>닥</u>
	만, 「도로법」 제77조제1항 위
	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
	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